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30일, 황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2024.11.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제424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4.23.)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황 회 의원)

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교 과정을 지원하는 예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장려수당은 단기복무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그 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의 경우 장교로 임용되기 전의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므로 장려금 전액이 비과세로 지급되는 반면 장려수당의 경우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에 대하여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졸업생의 경우 동일한 전형에 선발되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단기복무 지원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장려금으로 일원화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대학 졸업생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우수한 인력이 보다 원활하게 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개정안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에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도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하여 장교 지원율을 제고하고,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부사관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단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대상을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 지원자 및 부사관에게까지 확대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